

제보자의 사생활보도와 법·논리적 문제

팽원순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늘어나는 정치인의 언론인 고발

근래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하거나 하는 일이 전에 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일이 이처럼 늘어나게 된 것은 1987년의 자유화 이후 정치활동이 훨씬 활발해진 데서 정치가나 공직자들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과 새로운 신문, 잡지 등이 부쩍 늘어나게 된 결과 이것저것 아무 이야기나 무책임하게 마구 써내는 저질의 간행물이 많아지게 된 탓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근래 정치인의 도의가 그들의 다른 어느 조건보다도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언론도 그 점에서 문제가 있는 정치 인이나 공직자들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 일이 흔해짐에 따라 그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보도가 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 받아야 할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물론, 그 전이라도 그들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잘못된 보도가 나올 경우 그들에게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 최대한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은 틀림 없는 일이다.

그렇지라도 권력이나 정치인을 감시하고 비판함과 아울러 그들에 관한 진실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어길 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이다. 진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론기관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허위나 확인되지 못한 사실을 보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보도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론기관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동시에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해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민주정이란 피치자인 국민이 통치자가 국정에 관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해 적절히 알림을 받지 못하는 한 무의미한 것이며 1) 그런 점에서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정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책임이며 그 때문에 민주정에 있어서의 언론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인 기능이 되는 것이다. 2)

II. 언론억제에 이용될 가능성

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데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 해서 유권자인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언론기관이 그의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이건 대통령 선거이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로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은 물론 그들 자신의 건강, 재산상태, 가족, 교우관계에서 과거의 경력이나 여성관계 등 그들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사항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선거에서 선출되어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공직자(public official)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후보자들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여성 관계도 흔히 후보자들에 관한 보도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근래 특히 정치인들의 도의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여성관계가 언론기관에 의해 크게 보도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였던 정치인이 도중에 선거를 포기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근래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인의 도의가 그들의 어떤 조건보다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후보자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여성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되고 정확한 사실인 한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으며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관한 정보는 후보자의 대통령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거나 확인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피해자인 후보자는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 조치로는 형사고발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디어를 상대로 한 사건이면 어느 경우이나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명예훼손 사건이면 형사고발로 해서 상대방에게 형사벌을 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언론을 상대로 할 경우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해서 언론기관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 수 있는가?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권력에 가까운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그런 경우 으레 언론을 형사권으로 다스리고자 한다가거나 또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언론인을 구속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면 그것이 언론을 억제하는데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거나 후보에 관한 자유로운 보도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만 주권자인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치인이나 검찰의

그러한 태도는 선거보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공인의 비판인수의 자세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국정의 담당자로서, 국민의 공업으로서 국정의 운영이나 집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과 언론기관에 의한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때로는 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언론에 의한 공표나 비판을 참도록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인(public figure)이기 때문인 것이다.

공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신분이나 직업, 직분 등 때문에 당연히 공인이 되는 사람들로써 정치가나 공무원, 예술인 등이 그것이고 둘째는 사건이나 공공의 문제, 행사 등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공인을 미국연방최고재판소의 파우웰 판사는 「전적인 공인」(total public figure)³⁾ 이라고 불렀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공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가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 중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그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에 참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에 관해서는 전인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인으로서 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가장 크게 제한받는 위치에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들의 사상이나 신념, 정책, 자질, 능력은 물론 그들의 인격이나 생활태도 등을 익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정치가나 후보자들은 국민의 선택이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 판단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 즉 여성관계, 교우관계, 전과, 전역과 건강, 자산문제 등은 그들의 인격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공중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에드워드 케네디가 여비서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한 사건 때문에 후보를 포기해야 했고 또 역시 민주당 후보이던 게리하트가 젊은 여성과의 관계가 신문에 폭로되어 입후보를 단념해야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것처럼 정치가의 경우는 보통사람 같으면 완전히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관해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⁵⁾

「공무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선정, 파면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공무원 또는 그 후보자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공무원이나 후보자에 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또 알 권리를 갖는다…… 특히 국회의원 내지는 그 후보에 관해서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적부의 판단에는 거의 전인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은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의 전과사실을 밝힌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인데 전과의 사실은 본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폭로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공표가 정당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그것을 승인하고 있다.

「공인」이라는 개념이 각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64년에 있었던 미국연방최고재판소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 대한 판결(6) 이후이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이란 1962년에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남부 흑인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광고에 대해 설리번이라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러시의 경찰국장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뉴욕타임즈가 연방최고재판소에 상고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연방최고재판소는 공직자는 그의 공무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갖고 비판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거나 부주의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그 비판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의 경우는 비록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그 비판자가 악의를 갖고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판정한 것이 있다.

언론자유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념비적인 판례로 평가되는 이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큰 축으로 늘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에 의한 동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개정 제 1 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는 오랫동안 우리들의 판결로써 확정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공공의 쟁점에 관한 토론이 억제되지 않고 힘차게 그리고 충분히 개방된 채 행해져야 하며, 그 토론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예리한 공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깊은 국민적인 약정을 배경으로 하여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동판결은 「잘못이 있는 언사는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숨쉴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여 자유로운 토론에 있어서의 오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법이 공직자의 공무행위를 비판할 때에 그 비판자가 내세우는 주장이 모든 면에서 완전한 진실임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또한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물 것을 각오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를 비판하려는 국민에게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동판결은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비판자가 공직자를 상대로 비판한 사실이 100 퍼센트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여 다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면 그가 비판의 발언을 억제당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7).

IV. 강조되는 정치인의 도덕성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정에 있어 언론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권력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로서의 구실을 하며 국정운영이나 공직자들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위시한 공직자들에 대한 보도나 비판이 최대한으로 자유로워야 할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공직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언론에 의한 보도나 비판이 뼈아픈 것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절대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걸핏하면 언론기관을 상대로 그 보도나 비판이 불만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은 그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전래의 관존민비적인 관념에 젖어 있거나 민주정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의 법리가 가르치는 것은 공직자이기 위해서는 비록 잘못된 내용의 것이라도 그들의 공직행위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보도나 비판이라도 감수해야 하며 그래야만 공개의 왕성한 토론을 통해 민주정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의 공복임을 내 세 우면서도 국민이나 언론의 비판이나 질책을 거부한다면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근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도의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도의적이고 처신이 깨끗해야만 부패나 부정이 없는 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구린 데가 없어야 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어 왔다. 그 결과 특히 선거에 의해 공직에 선임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여성관계나 친분관계, 전력, 자산과 건강까지도 그에 대해 더이상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에 있어서 지배적인 의견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경향 때문에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이 여성관계나 축재를 더이상 그들의 프라이버시로서 비밀로 지켜줄 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기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8) 종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론기관이 정부나 국회 요직에 있는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경우 그들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 어지간한 일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들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자세나 습성까지도 공직수행에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되면서 종래와는 달리 사생활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자들은 오랫동안 정부각료나 국회의원들의 여성관계나 주벽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덮어두고 보도하지 않는 것을 그들끼리의 묵계인 것처럼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보도기관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다. 미국의 예로, 1970 년대에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장의 요직에 있던 월버밀스 의원이 알콜중독으로 주벽이 심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 하는 도중에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자들은 그에 대한 정의로 그것을 애써 모르는 체 덮어두고 전혀 보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밀스 자신이 자백해서 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공직수행에서 여러 가지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진 일이 있었다.9) 일본에서도 종래 정부요직에 있는 정치가들의 축재나 여성관계는 기자들이 모르는 체 하고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게 되었다 그 한 가지 예로 일본의 종합잡지 「문예춘추」가 1974년 11월호에 실은 「외로운 월산회의 여왕」이라는 기사에서 당시 수상이었던 다나카의 여비서로서 그의 금고를 지키는 구실을 하면서 권세를 누리던 여성의 이야기를 폭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나카의 축재와 그 여비서의 행세는 그때까지 일본의 정치기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었는데 아무도 감히 그것을 기사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문예춘추」의 그 기사가 다나카 수상의 실각을 가져오는데 도화선으로서의 구실을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이 그런 것도 서슴없이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의 도덕성과 그들의 생활태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하게 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치가나 공직자 그리고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축재, 여성관계, 전역 등은 충분히 언론에 의한 보도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V. 공인과 프라이버시

미국의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 통신의 보도지침(Statements on Guideline)은 「프라이버시권과 공공의 문제에 관한 알 권리 사이에서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개인의 사사에 속하는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해 공공의 문제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신문,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보도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기를 바라지 않는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릴 것을 임무로 하는 매스미디어의 보도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남에게 공표되기를 원치 않는 자기만의 생활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이 본인의 뜻에 반해서 몇 십만 또는 몇 백만부를 파는 신문이나 몇 천만의 시청자가 함께 보는 TV 방송의 보도를 통해 공표되었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당하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힘이 강해질수록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자유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절대로 보장되어야 할 지극히 중요한 권리인 것이다.

프라이버시권도 중요한 권 리이지만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약이 된다. 프라이버시권이 지켜주는 영역만큼 보도의 자유가 미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서로 대립, 충돌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알 권리가 분명히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경우가 즉 공직자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관심(legitimate concern)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사적인 영역이 거의 없으며 미디어로서는 그들에 관한

한 어떠한 보도를 해도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다만 공직자라고 해도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좁혀질 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논자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당해자의 권력이나 유명세에 비례한다」 10)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령 대통령이 아침에 무엇을 먹고 누구와 어떤 내용의 전화를 하는 등의 일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자산이나 가족, 친분관계, 전력은 물론 이성관계나 건강문제까지도 국민에게는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의 적응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인이 여성관계나 금전관계로 스캔들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사적인 것이라도 당연히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에 관해 그들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보도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책임이지만 다만 그러한 보도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고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특히 후보자의 여성관계나 그 밖에 스캔들에 관한 보도인 경우는 그것이 그 본인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치명적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취재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문윤리강령은 「보도는… 출처와 내용에 있어 보도가 확인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능력이 미치는 한 철저와 정확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전문언론인단체인 SDX의 윤리강령은 「부정확한 것과 철저를 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은 어떠한 보도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지만 선거나 후보에 관한 보도의 경우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보아서도 어떤 기사 보다는 「철저와 정확」을 기해야 할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성격의 보도라면 무엇보다도 그 취재원이 확실해야 하며 또 취재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취재원이나 확실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다른 신문에 난 것을 확인도 없이 옮겨 싣거나 여러 사람들에게서 얻어들은 전문을 근거로 해서 쓴 기사라면 결코 진실된 보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신문이나 방송들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와 관계를 맺었다는 여자의 제보를 19건이나 받았으나 그들과의 면담에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 없어서 그 어느 것도 기사화하지 않았으며 그런 제보가 있을 때마다 각 언론사에서는 그 제보의 내용을 클린턴 측 선거대책본부에 알려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Ⅶ. 정치인의 전사에 대해 과감히 보도할 필요

선거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선거는 국정의 행방을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인데 그러한 선거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로는 선거에 나선 각 후보자와 그들이 속하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 정책은 물론 후보자 개인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인품 등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여건 등 그들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근래는 정치 지도자들의 도의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나 친분관계, 여성관계, 전역 등과 그 밖에 그들의 도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도 물론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보들이 미디어에 의해 다양하게 수집되고 제공됨으로써 유권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된 것이어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에 있어서의 언론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은 지난번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서 적절히 보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선거기간 중에 많은 기사를 동원해서 수집하고 제공한 정보는 양에 있어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지만 뉴스로 해서 제공된 그들의 정보가 질적으로나 그 내용으로 보아서 과연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에 알맞는 적절한 정보였는가 하는데 관해서는 다분히 의문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신문들만 보아도 그들의 선거보도는 후보자의 정당이나 정강, 정책등에 관해서는 형식상으로 구색을 갖추게 하는데 그치고 주로 후보자들의 유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이나 일거일동을 전하고 지역마다의 후보자들의 우세, 열세를 예상하는 극히 한편적이고 획일적인 경마저널리즘적인 보도방식으로 시종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보도로써 과연 유권자들의 바른 선거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후보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념이나 정책, 그리고 그때까지의 정치지도자로서의 공과 등에 관한 소상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의 도의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산상태나 친분관계 등은 물론 그 동안 인간으로서 살아온 과정, 그리고 여성관계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스캔들에 관련된 전역 여부 등에 관해서도 충분한 보도가 뉴스로써 보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문이나 방송은 후보자들의 리더십의 조건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도의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후보의 경우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일부 시인하고 항상 여자관계는 깨끗이 해결해 왔다는 말을 했으며 기자들은 그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솔직한 성품이라고 칭찬까지 했다. 그러고는 어느 신문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면 혼외에서 여자관계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당연한 일이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도의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본 때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난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 3의 후보로 나섰던 로스페로 같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여자와 혼외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여자와의 관계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을 갖고 해결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랬으면 그는 당장 후보의 자리에서 내몰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근래에 와서는 정치가들의 여자관계를 더 이상 전처럼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앞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는 언제 까지나 소실을 거느리고 많은 여자와 혼외의 관계를 맺은 전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과 같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높은 도의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매여있어야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혼외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힌 일이 한번도 없었다. 에드워드 케네디나 게리하트와 같은 유능한 정치가들도 혼외의 여자관계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인들은 문란한 여성관계를 갖는 것을 부도덕한 일로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보다 엄격한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이든 국회의원 후보이든 축첩을 하거나 여자관계가 난잡하거나 부정축재를 하거나 한 전력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밝혀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축첩을 하거나 여자관계가 문란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이지만 우리 언론도 도의 정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여성관계나 부정축재 등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며 그것을 폭로하고 보도하는데 있어서 과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진실로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히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주

- 1) Deni Elliott, ed., Responsible Journalism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6), PP.21-23
- 2) Ibid.
- 3) Don R. Pember, Mass Media Law, 4th ed.(Dubuque, Iowa: W.C. Brown Publisher, 1987), pp.150-152. All - purpose public figure 라고도 한다. 공인을 ① 공직자 ② 전문직적 공인 ③ 제한적 공인의 세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 4) 五十嵐清, (명예와 프라이버시) (도쿄; 유비각: 1970) , pp.171-176
- 5) 동경지재 소화 33(1958) 12. 24 판결, 최고재 소화 41(1966), 6. 23 판결.
- 6)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
- 7) Donald M. Gillmor and Jerome A. Barren,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St. Paul, Minn.: West Pub. Co., 1974), p.242.
- 8) 山川洋一郎, 山田卓生編, 유명인과 프라이버시(동경: 유비각, 1987), p.53

9) C.G Christians, K. B. Rotzoll and M.Fackler,
Media Ethics(New York: Longman, 1983), PP.112-114 : Eugene Goodwin,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Ames : Iowa State Univ. Press, 1983), p.214

10) 山川洋一郎, 山田卓生編, 앞의 책, p.120

11) 小西昭之, 「미국 대통령선거와 매스미디어」,신문연구(일본신문협회판) , 1993 년
1 월호, NO.498. p.35

-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문학박사)

- 저술: 「비교인문학」 (공저),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 「현대신문 방송도보론」,
「언론법제신론」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